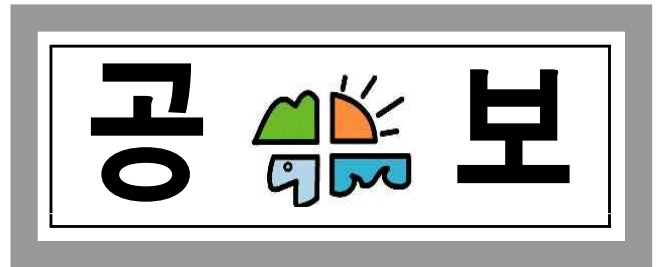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98호 2012년 5월 7일(월)

공 고

- 속초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공고 제2012-311호

「속초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지역과 도시가스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대체청정에너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 |
|-----------------|---------------|
| 가. 보조사업자 규정 | (안 제2조) |
| 나. 보조대상의 범위규정 | (안 제5조) |
| | (안 제8조) |
| 다. 보조금액의 범위규정 | (안 제6조) |
| | (안 제9조) |
| 라. 보조사업의 절차 규정 | (안 제7조) |
| 마. 보조사업자의 규제 규정 | (안 제15조~제16조) |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2. 5. 4 ~5. 29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 5.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속초시장 (참조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 ☎ 639-2373 / FAX 639-246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속초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라 함은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기, 태양열난방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청구와 수령을 사업자에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본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
2.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
3.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제6조(지원규모)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며,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1명)

2.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도시가스관련 부서장(건설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리담당이 된다.

⑧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제8조(지원대상) 속초시 단독주택 지역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중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시설을 하는자가 시장에게 신청한 우선 순으로 하되 현지 확인 후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제9조(지원범위) ①시장은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자연부락 등)에는

이 조례 제2조제4호의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시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의 시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13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